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
해지사유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위의 해당되는 ()에 "√" 표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